

유관기관 상품비교

구 분	건축사공제조합 (보증·보험회사)	SGI서울보증 (보증회사)	엔지ニア링공제조합 (보증·보험회사)	건설기술운영공제조합 (보증·보험회사)
■ 손해예상공제(보험)	■ 건축사법 제24조에 따른 손해예상 공제(보증)상품 취급	■ 상품 없음	■ 「엔지ニア링신설인증법」에 의한 손해예상공제 및 보증상품 취급	■ 「건설기술운영법」에 의한 손해예상공제 및 보증상품 취급
	※ 티 조합에게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부정하게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상품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, 수수료는 우리조합이 지원하거나 등록입니다. 인적당도로 가입하지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무화장이 아니라, 수수료 증액의 이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■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공제(보증)상품으로, 아닌 보증상품으로, 사고로 3개월 청구권을 유지하시는게 바랍니다.	■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손해예상공제 및 보증 업무에 대해 사업승인 받지 않음. 다만, 각각의 업무에 대해 유사한 요율체계를 가지고 있음.
■ 보증	■ 수수료율 비교	※ 티 조합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는 부수 또는 재무를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부수 또는 재무의 이행을 담보	■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임차보증상조합은 모든 0.25 0.27 0.2 SGI서울보증 0.082~ 0.055~ 0.055~ 0.065~ 0.065~ 1.645 2.164 1.359	■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임차보증상조합은 모든 0.25 0.27 0.2 엔지ニア링공제조합은 당장 2천원 상수

* 유의하시기 바랍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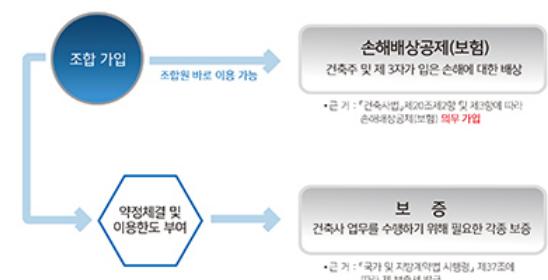
- SGI서울보증에서 밀집하고 있는 손해예상보증회원은 「건축사법」제20조제3항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손해예상공제(보증) 상품이 아닌 보증상품으로 서로 밀접 시 건축주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다시 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이 있음을 유의 하십시오!
- 「건축사법」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사업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은 건축사공제조합만이 유일하므로, 건축사사무소는 우리조합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

■ 서울특별시 서초구 흐름길 317 건축식민 6층 | TEL 02-3473-0900 | FAX 02-3473-0921 | www.cafco.kr
손해예상공제법으로 인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○ 한화손해보험 ■ Heunguk

건축사공제조합은 「건축사법」제38조의3(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)에 따라 설립되어 등법 제38조의 4(공제조합의 설립인가), 「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37조에 의거 공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The screenshot shows the 'Construction Sector' section of the website. It features a blue header bar with the text '건축사공제조합은?' and a logo consisting of three overlapping blue squares. Below the header, there is a large blue button with white text that reads '건축사 업무에 따른 손해배상공제·보증·용자 등의 사업을 통해'. Underneath this button, there are three numbered items in a white box:

1.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2. 건축사의 비용부담 완화 및 공제사업 수익금의 환류를 통한 건축설계업계의 발전 도모
3.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



구 분	내 용
자원한 손해예상공제료 및 보증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손해예상공제(보증수수료)에 유리하게 건축사 업무에 따른 '건축사법', '상의 업무종류별 모집요강'을 갖추고 저렴한 공제료로 받길 바랍니다. ↳ 입증보증은 무려 이용률이 있으므로, 계약 하자 신급금지급보증서 등 95% 서울보증과 비교되는 경우에 매우 저렴합니다.
전자보증 및 전자결제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나우常说(GOB)은 연계하여 전자보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↳ 실무한 전자결제시스템 활용으로 허증비용 및 발급비용 감소하여, 수료금 납부에 따른 승인 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.
구성권청구가 없습니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손해예상공제(보증)이 기관화되면서 광장하고 발생 시 조각이 건축주에게 배상금을 지급되거나 조합원에게 구상청偿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. ▣ 보증보험사는 예상금을 지원하여 건축사에게 청구
공제사고처리 전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다른 공제조합에 비해 공제사고처리의 전문화로 조합원의 민원은 확실히 도모되고 있습니다.
우대조합한 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후회없는 계약을 통해 보증수수료 이율 시 대비보증인 자격인증 ↳ 입증수수료, 공동수 및 보증수수료 후납으로 한 번에 결제 ▣ 우대조합인 자격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분과 농어민분야 이상,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법인전용사무소에서 신설험사부에 솔직한 협약 ■ 손해예상공제에서 발급 시, 기본상품에 특별할인을 수기하시면서 다양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■ 대체로 예상금은 1회정도로 10% 미만에서 100%까지 신설법인인 전기소방, 통신, 구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■ 이전에 계약금액보다 궁금한 금액을 많이 기입하는 등 흐름상 조건이 있을 경우 기업이 가능합니다.
손해예상공제 특별한란 제공	



■ 최소출자 가입과 편리한 업무이용

-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사무소에서 최소 5회 출석으로 개인이 가능합니다. 또한 손해보험공사법무는 개인으로도 건수와 가입금액에 재한 없이 아동이 가능하며, 보증업무는 약정(승인금)에 비례하여 보증서 발급한도 부여 체결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 - 증정금에 비례하여 저당상환 또는 배당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

- '건축사업법 제 38조의3'에 의해 설립되었으며, 등록 제 383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설승인을 받아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권자증권과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 - 다른 강제조항도 각 근거 법에 의해 해당 업종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▣ 조합원의 이익도모·건축업계 활성화

- 조달관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서 수수료로 제공하고, 지원장을 찾기 때문에 시장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 - 조달 이익을 건축업계로 환원하여 건축사(?)의 방송뿐만 아니라 국민인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